

## 출산했을 때



### ○필요한 절차

- (1) 의사나 조산부로부터 출생증명서(출생신고와 동일양식)를 받습니다.
- (2) 출생일을 포함하여 14 일 이내에 모자건강수첩과 부모의 국적증명서(여권 등. 외국인부부의 경우), 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외국인부부의 경우)를 가지고 시청이나 지소, 서비스센터,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에 출생신고를 합니다. 이 때 출생신고 기재사항증명서를 받습니다.
- (3) 30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취득 절차를 밟습니다. 단, 60 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.

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주민기록담당 0798-35-3104  
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호적신고담당 0798-35-3128  
 외국인 재류종합정보 센터 0570-013904  
 ( I P, 해외 03-5796-7112 )

### ○건강보험과 출산비용

정상적인 출산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.

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.

건강보험에서 병원 등에 직접 출산육아일시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(직접지불제도).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실 경우는 출산하는 병원에 문의해 주십시오.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청구합니다.

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건강보험과 0798-35-3120(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)

### ○국민건강보험료의 감액

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에는 모자건강수첩 등 출산일(또는 출산예정일)과 단태임신인지 다태임신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과 0798-35-3117

※ 주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바랍니다.